

검 토 보 고 서

의 번	안 호	제130호
--------	--------	-------

2018. 12. 20.

건 명	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희망마을건설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」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현행 「논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」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인센티브 제공규정 삭제(안 제3조제4항, 안 제3조제5항)
- 나.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 삽입(안 제6조제1항)
- 나. 4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으로 변경(안 제6조제3항1호)

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(건설업 등록 등), 제22조(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), 제38조(불공정 행위의 금지),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(공사도급계약의 내용)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